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709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536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70936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석, 문준홍

피 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호

변론종결 2022. 1. 13.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의 2015. 11. 26.자 1억 7,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8. 피고의 아버지 C과 광양시 D 임야 34,722㎡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부터 2년 후 투자금 전액을 상환하고 사업부지 내 331㎡를 투자 소득금(현금정산시 1억 원에 대한 연 이윤 2,5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C에게 2011. 12. 8. 8,500만 원, 같은 달 10. 1,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C은 2013. 12. 16. 투자약정 이행기간을 2014. 6. 30.로 연장하고, 만일 불이행하는 경우 연장 기간의 이자를 월 2%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C은 2014. 12. 24. 원고에게 2015. 1. 30.까지 1억 6,000만 원(2015. 1. 10.까지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추후 정산)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의 남동생인 E은 2014. 11. 24. 그 명의로 광양시 F 임야를 3억 3,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5.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G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G조합은 2015. 1. 15.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E의 계좌로, C은 같은 날 1,530만 원을, H은 170만 원을 각 E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계좌에서 같은 날 계좌잔액 2억 9,700만 원이 모두 인출되어 광양시 F 임야의 매매잔금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E은 2016. 1. 12. 그 명의로 광양시 I, J 토지 중 C이 대표이사인 K 주식회사의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L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L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중 283,632,507원은 G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216,081,893원은 피고에게 이체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1. 26. M으로부터 그 명의로 광양시 N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억 5,000만 원(계약금 3,500만 원 계약시 지급, 잔금 3억 1,500만 원 2016. 1. 12. 지급)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12.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O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대출금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주식회사 P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020. 5. 26. 매매를 원인으로 2020.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 12, 1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리금 채권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채무자 C의 무자력

채무자 C이 원고에 대한 차용증에 기한 3억 4,000만 원(= 1억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15. 1. 31.부터 2020. 1. 31.까지 60개월간 월 2% 이자 상당액 1억 8,000만 원(= 1억 5,000만 원 × 2/100 × 60개월)) 이상의 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C이 2012. 8.경 도산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C은 이 사건 매매 당시 무자력으로 판단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여부 및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8,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만 22세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매수할 자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피고 명의의 G조합계좌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매수 당시 계좌잔액은 -34,905,036원으로 마이너스였다), ② 2015. 2. ~ 2015. 12.경 C 명의로 6회, H 명의로 1회, K 명의로 1회로 각 G조합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였고, 2016. 2. ~ 2017. 8. 26.회에 걸친 대출원리금 변제시 E의 이름으로 입금된 것은 없고, 대부분 C이나 H, 피고의 이름으로 입금되어 실제로 E이 K 명의 부동산과 광양시 F 임야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자신 및 E이 H의 식당에서 일한 대가로 5억 원 G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변제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나, C 및 피고의 당시 나이, 근무가능기간, 급여의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나 피고가 위 식당에서 일한 대가 상당액을 대출원리금 변제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C이 2019. 4.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2013. 12.경부터 광양시 J 일원 13필지를 K 명의로와 E, 피고 명의로 매입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C은 2019. 3. 21. 광양시 J 등 7필지 매도 당시 별지에 'K 주식회사 소유지분과 피고 소유 토지의 전체 실소유자인 C 소유지분 10,732㎡(3,243평)의 잔금지급은 계약체결일부터 12개월 후인 2020. 2. 20. 지급한다.'고 기재한 점1)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I, J 토지 중 K 주식회사의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L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C이 E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C은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액 3억 5,000만 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되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2015. 11. 26.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2015. 11. 26.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바, 매도인 M이 선의이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취득은 유효하고,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액 3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2억 1,600만 원을 공제한 1억 3,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된 이상,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

1) 피고는 광양시 J 등 7필지의 매도를 C에게 위임하였다고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지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K 및 피고의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C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C이 책임지고 이전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매매계약의 대리인이 책임지고 매매계약을 이행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C이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갖고 있음을 뒷받침할 뿐이다.